

학교급식법에 나타난 조리사의 직무에 관한 연구

김 속 희

(해전대학 호텔조리과 조교수)

< 목 차 >

I. 서론	VI. 국내외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배치 및 사업현황
II. 학교급식의 실시배경	VII. 결론
III. 학교급식의 현황	참고문헌
IV. 우리나라 학교급식 조리사의 직무만족도	ABSTRACT
V. 우리나라 학교급식법에 나타난 조리사의 역할과 개선점	

I. 서론

학교급식법은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한 학생의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¹⁾. 즉, 학교급식의 목적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을 균형적으로 공급하여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편식교정 등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며, 협동심과 질서의식 및 봉사정신 등 공동체의식 함양에 기여하므로 건강하고 건전한 국민과 민주시민을 육성하고, 나아가 국민 식생활 개선과 전통식문화 계승 및 국가 식량정책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는 1972년 10월 용인 남곡에 자활급식 실험학교가 설치되면서 77년에 학교급식 규칙이 문교부령으로 공포되었으나 1977년 9월에 초등학교 점심급식중에 제공되었던 크림빵의 포도상구균이 원인이 되어 사망자 1명과 5,500명 이상의 식중독 발병자를 발생시킨 사건이 발생하면서 일부 시범학교에서만 실시되던 학교급식이 중단되었었다²⁾. 이리다가 1981년 학교급식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학교급식이 다시 시행되기 시작하였고, 그동안 몇가지 형태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1997년에는 전국 초등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전면 실시한다는 국가적 목표가 설정되었고, 1999년에는 중·고등학교에서도 확대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되어 1999년 4월 현재 초등학교의 99.2%, 중학교의 30.3%, 고등학교의 48.2%, 특수학교의 97.5%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다³⁾.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인해 집단급식소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함께 학교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제반상황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투자와 여건조성을 위해 공동조리 또는 공동관리제도까지 등장하게 되어 위탁급식을 허용하

게 되었다. 특히 학교급식 등의 집단급식에서는 단한번의 오염으로써 식중독이 대규모로 발생하고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위해 요인을 다분히 갖고 있어 보건위생학적 측면을 시급히 보강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서는 영양공급위주의 관심이 주로 쏟아지고 있는 형편으로, 식중독 예방 등의 위생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심과 관리에 대해서는 아직 미흡한 편이다⁴⁾.

미국의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CDC)의 조사에 의하면 미국에서 매년 식중독과 관련하여 6백 50만~3천 3백만명의 식중독 환자가 발생하여 약 9,000명이 사망한다고 한다⁵⁾. 식중독환자는 보건당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일년에 몇 명이 발생하였으며 사망자가 몇 명인지 알아내기란 용이하지 않아서 식중독으로 보고되는 공식적인 추계는 선진국에서조차도 병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 세계적 전문가들의 지론이다. 실제 발생사례의 10%정도만이 보고된다는 견해도 있으나⁶⁾, 세계보건기구(WHO)의 최근 보고에 의하면 이보다 훨씬 발생이 많을 것으로 보아 식중독이 보고된 사례보다 300~350배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해마다 15억명이 설사증상을 나타내며, 5세 이하 어린이 300만명 이상이 사망하는데 설사질환의 상당수가 식중독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1996년 일본과 1997년 미국의 학교에서 발생한 식중독 사고와 같이 식중독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식중독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식품위생의 개선을 위하여 외국의 식품위생관리 현황을 학교급식을 포함한 식품위생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더욱 확대되어갈 학교급식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들의 학력수준이나 업무수행능력이 과거에 비해 상당히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기회를 차단함으로써 조리사에게는 사기저하와 능력개발에 대한 동기부여의 의욕을 떨어뜨리며 사회로서는 그만큼 전문적 능력을 공급받지 못하는 손실을 감당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학교급식의 실무자에 해당하는 조리사의 직무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점점 위험요인이 더해지고 있는 학교급식의 위생면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리실무자인 조리사들이 그들의 직무수행능력에 맞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조리사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학교급식법에서 상고하고, 이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검토하면서 효율적 직무분담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에서의 조리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리사의 직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한 시정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학교급식의 실시배경

학교급식은 산업혁명의 여파로 어린이 노동이 줄어들자 실직한 어린이에 대한 대책으로 공교육이 발달함에 따라 급속히 발전하였다. 선진 여러나라에서는 100여년 전부터 실시되기 시작하였으며, 1900년대 초부터는 안정적으로 확대 발전되어 왔다. 프랑스에서 1849년에, 일본은 1889년에, 영국은 1865년에 소규모로 학교급식이 시작하게 되었고, 미국은 1853년에 뉴욕의 직업학교에서 학교급식을 시작하였다⁷⁻⁹⁾.

프랑스에서는 1849년에 국방성에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기금이 설치되어 일찍부터 국가에 의한 학교급식제도가 확립되었고 1881년에는 파리의 약 500개 초등학교에서 학교식당을 갖추고 급식을 실시하였으며 1925년에는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영국에서는 1906년에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었고, 1944년 교육법에 지방 교육당국의 학교급식제공의무를 규정함에 따라 학교급식제도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1980년 대처 정권하에서 교육재정 감축의 필요증대와 결식아동이 감소되는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하여 지방교육당국의 학교급식 제공의무가 해제되고 민영화되었다.

스웨덴에서는 1937년에 스웨덴 왕국의회가 학교급식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공포하여 국가사업으로 학교급식이 시작되게 되었으며, 현재는 초·중·고 전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광활한 토지에서 얻은 풍부한 농산물을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아동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모색하면서 발전해왔다. 1900년대 초부터 많은 도시에서 교육당국이 급식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사업을 시도하여 1931년에는 약 11,500개 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였고 1930년대 대공황시 잉여농산물 처리계획의 일환으로 학교급식이 정책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본격적으로 학교급식을 시작한 것은 1935년 연방정부에서 학교급식비용을 차관형식으로 일부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이고 1946년에는 학교급식법을 제정하였다. 동법들의 주요목적은 “국가안전보장의 일환으로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지키며 풍부한 영양의 농산물과 기타 식품의 국내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학교급식 사업을 확대하고, 각 주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기타 원조조치를 강구하고, 학교급식용 물자 및 시설·설비의 확보를 충실히 하게 하는 것이 미국국회가 지향하는 정책이다”를 규정하고 이를 농무성에서 주관하고 있다. 그후 연방정부는 본격적으로 학교급식을 지원하게 되어 전국의 초·중등 학교에서는 학교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학교급식은 단지 급식에만 그치지 않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건 및 영양교육, 좋은 식습관 제고 및 사회생활을 익힐 수 있는 계기로 삼았다^{3,8)}. 미국의 학교급식은 학교의 중요한 기능의 일부가 되었으며 급식의 형태도 다양하여 조리사 한 사람이 학교급식을 담당하는 작은 학교가 있는가 하면 대단위 조리시설을 갖추고 한 개 도시의 모든 학교에 점심을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같은 경우에는 catering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일부 식사를 공급받거나 외부식당에서 pizza 등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경우도 있다.

일본에서는 1889년 빈곤아동과 결식아동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을 실시하기 시작한 이후 크게 확대·발전하여 1947년에는 전국의 약 3,600개 소학교 학생 290만명에게 급식을 실시하

였다. 그후 1954년 6월에 학교급식법이 제정되어 의무교육기관에서 실시하여 현재에는 소학교와 중학교에서는 전면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일본은 동법률의 목적을 “첫째, 식사에 대한 이해 및 좋은 습관을 배우고, 둘째, 사회생활을 익히고, 셋째, 식생활의 합리화와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 넷째, 식량생산 및 소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것이다”로 규정하고 있다⁹⁾.

우리나라는 6.25전쟁이후 1953년에 전쟁 아동의 구호를 위한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 :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SAID(미국경제협조처 : United State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등의 외국원조에 의하여 처음으로 실시되었다. 외국원조기관에 의한 무상급식은 초등학교 전학생을 대상으로 1972년까지 20년간 실시되었으며 주로 빵급식이 실시되었다. 원조가 종료된 1973년부터는 우리 나라 정부부담과 학부모 부담하에 대상학생 규모는 감소되었으나 빵급식이 주를 이루었으며, 농어촌 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자체의 생산활동을 통한 자활급식이 시범적으로 실시되었다.

1977년 9월 서울지역 학교에서 급식빵 식중독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빵급식 제도는 중단되고 1978년도부터 현재와 같은 학교 자체조리 급식제도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으며, 1981년에는 학교급식법을 제정·공포하여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교내에서 직접 조리하여 급식하도록 하였다.

'80~'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나라의 경제·사회·문화가 선진국형으로 변모되어 핵가족화되고 소자녀 가정이 주류를 이루고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됨에 따라 종래 주부의 역할이었던 가족의 식사준비, 자녀의 도시락 준비 등이 소홀해져갔고, 영양부족보다는 영양의 불균형, 올바르지 못한 식생활로 인한 건강문제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요구에 의하여 초등학교급식은 '93년부터 크게 확대되어 '98년부터는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게 되었다.

초등학교 급식이 성공적으로 확대·정착되자 학교에서 늦게까지 남아 공부를 하는 중·고등학생을 위하여 “중등학교까지 급식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많아졌다. 그러나 중등학교 급식도 초등학교와 같이 교내에 조리시설을 갖추고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태로 확대하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학교급식법에서는 교내조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중등학교급식을 조기에 확대하기에는 어려운 형편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학교급식공급업자에 의한 외부 위탁급식도 할 수 있도록 1996년에 학교급식 제도를 개선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학교급식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중등학교 급식은 크게 확대되지 아니하고 학부모들의 학교급식 확대 요구는 높아지자 교육부에서는 1998. 2월 전국 중·고등학교 학생, 학부모, 교원 6,400명을 대상으로, 중·고등학생의 아침, 점심, 저녁의 식사양태, 급식실시에 대한 의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등학교 급식 실시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하고 등교하는 편이나, 매일 규칙적으로 식사하는 학생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였으며, 점심식사는 대다수의 학생이 집에서 가져온 도시락으로 하고, 저녁식사는 대체적으로 집에서 하나, 일반계 고등학생은 절반 이상이 집밖에서 해결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교에서는 저녁급식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³⁾.

때마침 대통령이 “고등학교급식이 시급하니 '99 전반기까지 고등학교급식 전면실시를 추진하되, 교육부장관과 행정자치부장관은 자치단체의 재원마련을 독려 할 것”을 지시함에 따라 교육수요자의 희망대로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급식을 위생적

이고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급식확대 정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특히, 학교급식의 정책적 추진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균형 잡힌 영양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형성하여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물론, 학부모의 도시락 준비 부담 해소, 학생들의 책가방 무게 경감 등의 효과 이외에 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므로 IMF관리체제하의 어려워진 가계에 개별적인 도시락 준비 비용, 또는 위탁급식 비용으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키며, 한편으로 조리종사자라는 고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여 가계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늘어나는 중식지원 대상학생에게 다른 학우들에게 지원대상임이 노출됨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하고도 긍정적인 효과가 많다.

Ⅲ. 학교급식의 현황

1. 학교급식의 연혁

- '53년: UNICEF(국제연합아동기금)등 외국원조기관에 의한 무상급식 실시(1972년 외국원조 중단)
- '72년 10월: 자활급식 실험학교 설치(용인 남곡)
- '73년: 국고에 의한 자립형태의 급식으로 전환(농·어촌 자활급식, 도시 제빵급식)
- '77년 1월 14일: 학교급식 규칙 공포(문교부령 제401호)
- '77년 1월: 도서벽지 자체조리 급식교 설치
- '77년 9월 22일: 학교급식빵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여 빵급식제도 폐지
- '78년 8월 1일: 급식학교의 영양사를 상용잡급으로 채용(3종), 학교 자체조리 급식제도 시범 실시
- '81년 1월 29일: 학교급식법 제정 공포(법률 제3356호)
- '81년 9월 8일: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정 공포(대통령령 제10460호)
- '82년 1월 1일: 급식학교 영양사를 보건직(7급)으로 배치(현재의 9급)
- '82년 2월 12일: 문교예규 제 4호 폐지로 '시범급식학교'를 '급식학교'로 운영
- '82년 3월 20일: 체육부 신설. 학교급식 업무를 체육부(학교체육과)에서 운영
- '90년 2월 12일: 학교급식업무를 체육부에서 교육부(의무교육과)로 이관
- '90년 12월 22일: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영양사 공동배치, 급식교 지정권자를 교육감으로.
- '91년 2월 5일: 소규모 학교에 영양사 공동배치(1일 2교) 시행(18명, 36교)
- '91년 5월 25일: 최초 공동조리 방식 급식학교 지정(공동조리교 6교, 비조리교13교)
-시설설치('91년 12월 완료), 급식개시('92년 3월, 조리교 1,422명, 비조리교 2,253명)
- '91년 8월 5일: 특수학교 급식학교 지정 13교(공립 1교, 사립 12교)

- 시설설치('91년 12월 완료, 급식개시('92년 3월. 2, 331명)
- '92년 3월: 공동조리 급식학교 영양사(보건직 7급)를 교당 2명씩 배치(비조리교 2교이상교)
- '92년 3월: 신규지정교에 조리사를 기능직(위생원)으로 배치('91년 지정교)
 - 공동조리교당 2명, 단독조리교당 1명, 특수학교 1~3명
- '93년 3월 8일: 경기도교육청 직제 개편으로 학교보건과 학교급식계 신설
- '93년 12월 10일: 학교급식법 개정(4차, 법률 제4,593호)
 - 학교급식 대상학교에 특수학교 포함, 학교급식 후원회 구성 및 경비부담
- '93년 12월 17일: 학교급식 대상에 급식학교 병설유치원(희망자에 한함) 포함 (학교급식법 제4조 제4호에 의거 교육부 장관 인정)
- '94년 3월: 급식학교 보건직 직급 조정(급식학생수에 따라 7~9급 차등 배치)
- '94년 9월: 일용직 조리종사원 퇴직금 지급 시행
- '94년 6월 17일: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6차)
 - 학교급식 후원회 설치 및 경비 부담
- '95년 3월: 공동조리 급식학교 보건직 직급 조정(2명배치교)
 - 7급 1명, 8급 1명
- '95년 3월: 공동조리교 조리사(위생원)정원 조정
 - 급식학생수 500명 미만 1명, 500명 이상 2명
- '95년 4월 6일: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7차)
 - 학교급식은 수업일에 실시(토요일 포함)
- '95년 10월 9일 : 급식학교 영양사 직렬 변경(보건직을 식품위생직으로)
- '96년: 학교급식법중 개정법률 개정 공포(1996. 12. 30, 법률 제5,236호)
 - 학교외의 장소에 공동급식시설 설치·운영, 학교 자율적으로 급식 실시여부 및 실시방법 결정, 민간업체에 의한 위탁급식 허용
- ※학교급식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개정('97. 4. 29, 대통령령 제15,361호 '97. 5. 13 교육부령 제693호)

2. 학교급식실시 현황('99. 4월 기준)³⁾

1) 급식실시 현황

초등학교 급식은 '98년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고, 중학교 급식은 현재 30.3%의 학교에서 실시되고 있으나 2002년까지는 연차적으로 확대실시할 예정이며, '98년도부터 정책적으로 추진하여온 고등학교급식은 '99. 2학기부터 전면실시할 예정이다.

<표 1. 학교 및 학생수 대비 급식실시 현황>

구 분	학 교 수 (교)			학 생 수 (명)		
	전 체	급 식	%	전 체	급 식	%
초등학교	5,688	5,640	99.2	3,834,561	3,315,511	86.5
중 학교	2,736	828	30.3	2,011,468	232,626	11.6
고등학교	1,921	926	48.2	2,326,880	594,965	25.6
특수학교	118	115	97.5	23,256	21,629	92.9
계	10,463	7,509	71.8	8,196,165	4,164,731	50.8

2) 운영형태별 실시현황

- 초등학교 급식은 99.3%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되, 이중 3/4정도는 학교 단독으로, 1/4는 인근학교와 함께 공동조리를 실시하고 있다.
- 중학교 급식은 40.2%가 학교에서 직접 운영하고 초등학교와는 달리 2/3가 인근학교와 공동조리를 실시하고 있다.
- 고등학교 급식은 학교 직접운영과 위탁급식의 비율이 거의 같다.
- 특수학교도 초등학교와 같이 99%이상이 학교에서 직접운영하고 있다.

<표 2. 급식 형태별 실시 현황>

구 분	급 식 전 체	학 교 급 식			위 탁 급 식		
		자체조리	공동조리	소 계	교내조리	외부조리	소 계
초등학교	5,640	4,283 (75.9%)	1,318 (23.4%)	5,601 (99.3%)	6 (0.1%)	33 (0.6%)	39 (0.7%)
중 학교	828	111 (13.4%)	222 (26.8%)	333 (40.2%)	42 (5.1%)	453 (54.7%)	495 (59.8%)
고등학교	926	410 (44.3%)	43 (4.6%)	453 (48.9%)	424 (45.8%)	49 (5.3%)	473 (51.1%)
특수학교	115	114 (99.1%)	0 (0.0%)	114 (99.1%)	1 (0.9%)	0 (0.0%)	1 (0.9%)
계	7,509	4,918 (65.5%)	1,583 (21.1%)	6,501 (86.6%)	473 (6.3%)	535 (7.1%)	1,008 (13.4%)

3) 재원별 소요경비

학교에서 급식을 직접 운영하는 초등학교의 연 급식경비는 총 9,133억원으로, 이중 학부모 부담금이 6,712억원으로 73.5%를 차지하며 학부모 부담금은 주로 식품비로 연 총 경비의 식품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91.9%로 6,169억원이다. 외부운반급식의 비율이 높은 중학교급식은 학부모부담이 높아 84%를 차지하며 고등학교 급식은 확대 추진중에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시설비의 비중이 높다.

<표 3. 학교급식 재원별 소요경비(백만원)>

구 분	계	교육비 특별회계	학교급식 후원금	학부모 부담금	기 타 (자치단체등)
초등학교	913,334	214,834	16,023	671,183	11,294
중 학교	49,513	7,239	397	41,584	293
고등학교	143,090	72,618	1,193	55,117	14,162
특수학교	5,687	4,623	24	1,040	0
계	1,111,624 (100%)	299,314 (26.9%)	17,637 (1.6%)	768,924 (69.2%)	25,749 (2.3%)

4) 급식종사인력 현황

학교에서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급식종사인력도 크게 늘어나 초등학교에만 영양사 3,764명, 조리사 3,681명, 조리보조원 19,264명 총 26,70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특수학교까지 포함하면 영양사 4,105명, 조리사 4,274명, 조리보조원 20,593명 총 28,952명이 종사하고 있으나 향후 급식이 확대됨에 따라 급식종사인력은 더욱 더 증가할 전망이다.

<표 4. 학교급식 관련 인력현황>

구 분	영양사(명)			조리사(명)			조리보조원(명)		
	정규	임시	계	정규	임시	계	정규	임시	계
초등학교	3,713	51	3,764	2,853	828	3,681	356	18,908	19,264
중 학교	88	9	97	53	91	144	18	450	468
고등학교	162	21	183	306	79	385	136	615	751
특수학교등	61	0	61	64	0	64	67	43	110
계	4,024	81	4,105	3,276	998	4,274	577	20,016	20,593

5) 학교급식 대상학교

- 의무교육대상학교(교육기본법 제8조)
- 특수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5호)
-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초·중등교육법 제52조)
- 기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
 - 중·고등학교
 - 급식학교 병설유치원

6) 학교급식 유형

- 학교급식 { 학교내에 급식시설을 갖추고 조리하여 급식
교육감, 교육장이 설치한 공동급식시설 급식
- 위탁급식 { 학교급식의(시설·설치) 위탁운영
조리·가공한 식품의 운반급식

7) 급식경비의 종류 및 부담자

구분	경비종류	내용	부담자
학교급식	시설비	급식시설·설비의 설치·유지비	○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급식후원회에서 부담가능
	운영비	연료비, 학교급식종사자의 인건비 및 소모품비	○ 학교 설립경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급식후원회에서 부담가능 ○ 학부모도 일부 부담가능
	식품비	식품 재료비	○ 학부모가 부담 ○ 초등학교의 도서벽지지역, 농어촌지역 학생과 급식학교 극빈학생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가능
위탁급식	급식비	학교급식공급업자와 학교장간의 계약에 의한 급식비	○ 학부모가 부담 ○ 초등학교의 도서벽지지역, 농어촌지역 학생과 급식학교 극빈학생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가능

8) 급식경비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구 분	지원 대상	지 원 액
학교급식	도시벽지지역	식품비 및 기타경비(1식당 약 750원)
	농어촌지역	식품비 1/3 및 기타경비(1식당 약 250원)
위탁급식	도시벽지지역	급식비중 식품비 및 기타경비
	농어촌지역	급식비중 식품비 및 기타경비의 1/3

※ 도시지역 초등학교의 식품비는 전액 학부모 부담.

9) 급식 위생 및 안전

-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배치 및 직무 규정(학교급식법 제7조, 시행령 제5조)
-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자격

- ┌ 1회 급식학생 50인이상 : 영양사
- └ 1회 급식학생 50인미만 : 영양사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

※ 인력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급식학생수 400인 범위내에서 인접한 2학교 이상의 급식을 공동관리 가능

- 학교급식법령에 의한 위생 및 안전점검 의무화(학교급식법시행령 제 3조의 2)
 - 학교장 : 매 급식시마다
 - 교육장 : 연 2회이상(초·중학교)
 - 교육감 : 연 2회이상(고등학교, 필요시 초·중학교)

IV. 우리나라 학교급식 조리사의 직무만족도

학교급식에 종사하는 조리사들은 급식전담직원으로 배치되어 있는 영양사와의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그들은 오랜 조리업무의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갖 졸업한 영양사에게서 조리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교급식법상의 문건으로 인하여 영양사와 많은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오랜 조리경험을 가진 조리사들과 영양학적 지식을 가진 영양사들과의 건전한 토론과 논의가 이루어지는 여건하에서만 상호존중과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결과로서 더 나은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은 확실하다.

예전과 달리 학교급식이나 기타 조리장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리사들의 학력이나 사무능력이 상당수준 향상되었고, 심지어 수능시험 성적이 조리과가 식품영양과보다 훨씬 높은 학교들이 많은 것이 현실인데도 대학을 졸업한 이후 학교급식에 종사하게 되었을때 영양사들

이 조리사들의 상급자로 되는 것을 볼때 모순점이 있다. 또한 식품영양과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일반인들이 학력에 제한없이 조리사 시험을 볼 수 있는 반면, 조리과 학생들은 영양사시험을 응시할 수 없는 현재의 제도에도 문제는 있다. 대학내 학과끼리의 기회균등의 입장에서 서로 시험을 볼 수 있게 해주든지, 아니면 시대적 변화에 따라 예전보다 훨씬 많은 능력을 수행할 수 있게 된 조리사의 직무에 대한 인정과 함께 영양사와의 동등한 협조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신분적 보장을 해주어야 한다. 물론 현재 영양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한 것은 기존 식품영양과의 졸업생들의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인력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조금이나마 보장해주려는 국가적 배려에 의한 것임을 안다. 또한 앞으로는 영양사시험과 관련된 과목들에서 52학점을 이수하면 기존의 정해진 몇몇 학과를 졸업한 학생만이 응시할 수 있었던 영양사 시험을 어느학과를 졸업한 학생이든 응시할 수 있게 한다는 법안이 통과 계류중인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는 대학들의 계열화 움직임에 따라 학과명이 정해지지 않고 계열내 전공분류에 따라 학생들이 졸업하게 되는 것을 대비한 대책이지 사실상 타 학과의 학생들과 영양사 시험 응시자격을 공유시키려는 뜻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52학점을 이수하려면 사실상 영양사 시험 과목들을 이수하는데 꼬박 3학기 내지는 4학기를 보내야 하기 때문이다. 타학과생들이 부전공으로 이수하기에 52학점은 너무 많다. 즉 타학과생들이 영양사 시험을 응시할 자격을 얻으려면 편입하거나 전공을 바꾸어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다.

한국조리사회 경기중부지회장인 김성호의 보고¹⁰⁾에 의해서도 학교급식 조리사는 대부분 영양사와의 관계가 불편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사와의 관계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총 234명의 학교급식 조리사들 중 39.7%인 89명이 '불만이다'고 응답했고 32.1%에 해당하는 72명이 '그저그렇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71.8%인 161명이 관계가 매끄럽지 않다고 응답한 것이다. 학교급식 조리사들은 그 이유로 첫번째, 권리와 의무의 불명확성을 들었다.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 5조 영양사의 직무와 책임에 의하면 영양사는 조리사에게 '식품의 조리지도 및 검식'을 하게 돼 있다. 또 조리사의 직무와 책임은 '조리사는 영양사의 지도 감독을 받아 식품 조리 및 위생관리를 한다'로 명시돼 있는데 이는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급식 조리사들은 한결같이 영양사는 조리를 지도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갓 졸업하고 자격증을 딴 영양사가 요리를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조리사를 능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이같은 법규정은 같은 직장내의 조리사, 영양사간의 불화를 조성시키고 원활한 업무 진행을 막는 결과를 낳는다. 두번째 이유로 조리사들은 호칭문제를 제기했다. 나이 어린 영양사가 경력 조리사에게 마치 아랫사람 대하듯 아줌마, 누구엄마 등으로 부른다는 것이다. 세번째는 조리법의 차이와 휴게실 이용문제, 영양사의 엉뚱한 조리지시로 조리사가 자신의 조리법을 제대로 펼 수 없다는 것이다. 설문조사한 234명의 학교급식 조리사중 학교급식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조리사가 90.6%에 달하는 203명으로 조리사가 학교급식의 전반적 계획에 참여치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라 김성호 지회장이 제안하는 바에 의하면 영양사와 조리사, 조리보조원의 책무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조리사를 실질적인 조리책임자인 조리실장의 역할이 부여되어야 하며 영양사와 조리사의 관계는 주종의 관계가 아니라 협력해야 하는 공동체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V. 우리나라 학교급식법에 나타난 조리사의 역할과 개선점

1. 학교급식법에 표기된 전담직원의 배치에 관한 건

학교급식법 시행령의 제5조에는 전담직원을 영양사로만 국한하고 조리실무자인 조리사에 대한 명기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 개정의 소지가 있다. 국민보건의 증진을 목적으로 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와 영양사를 각각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집단급식소에 필요한 실무자를 조리사와 영양사로 파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82년에 제정된 학교급식법에는 조리사와 영양사의 역할을 기술함에 있어서 식품위생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품위생법상의 표현과는 달리 학교급식법에는 영양사만이 급식전담직원으로 명시됨으로 조리사와의 협력관계를 방해하며, 오히려 갈등의 소지를 남겨두고 있다. 그러므로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①항에 명시한 급식전담직원을 조리사와 영양사로 두는 것이 타당하며 각각의 업무에 대해 명시해두고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현 행	개정 건의안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급식법 제7조(전담직원의 배치)</p> <p>①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급식시설과 학교급식공급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가진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 두어야 한다.<개정 96. 12. 30></p>	<p style="text-align: center;">학교급식법 제7조(전담직원의 배치)</p> <p style="text-align: center;">상동</p>
<p>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전담직원의 자격, 업무 및 배치)</p> <p>①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학교 급식전담직원은 1회 급식학생이 50인 이상인 학교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면허를 받은 자(이하 "영양사"라 한다)로 하고, 1회 급식학생이 50인 미만인 학교에는 영양사 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p>	<p>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 (전담직원의 자격, 업무 및 배치)</p> <p>①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식학교 급식 전담직원은 1회 급식학생이 50인 이상인 학교에는 식품위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리사 면허를 받은자(이하 "조리사"라 한다)와 식품위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양사 면허를 받은자(이하 "영양사"라 한다)로 하고, 1회 급식학생이 50인 미만인 학교에는 조리사, 영양사 또는 교육부령이 정하는 자로 한다.</p>

현 행	개정 건의안
<p>②학교급식 전담직원은 급식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단작성 및 위생관리 2. 식품재료의 선정 및 검수 3. 식품의 조리지도 및 검식 4. 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의 상담 5.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감독 	<p>②학교급식 전담직원은 급식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1. 조리사의 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식품의 조리, 검식 및 배식관리 2)식품의 검수 및 관리 3)세척소독된 급식기기의 위생관리와 급식시설의 안전관리 4)집단급식소의 조리일지 작성 5)조리실 종사자의 조리지도 및 위생교육 <p style="text-align: center;">2. 영양사의 업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식단작성 및 위생관리 2)식품재료의 선정 및 검수 3)검식 4)영양 및 식생활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의 상담 5)조리실 종사자의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p>③인접한 2이상의 급식학교의 장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급식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급식전담직원은 영양사이어야 하며, 1인의 영양사가 담당할 수 있는 급식학생의 수는 400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인접한 2이상의 급식학교의 장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급식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급식전담직원은 조리사와 영양사이어야 하며, 1인의 조리사와 영양사가 담당할 수 있는 급식학생의 수는 각각 400인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p>

2.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 제2항 2호의 개정 건의안 (식품의 검수)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 2항 2호에 의하면 현행 학교급식전담직원은 “식품재료의 선정 및 검수”를 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그 첫번째 이유는 식품위생법 제 63조 1항 2호에서 식중독 혹은 위생상의 중대한 사고 발생시 조리사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면허취소)을 밝히고 있는데 있다. 법적 책임이 조리사에게 있다면 마땅히 식재료의 반입시 그 신선도와 오염의 여부, 품질에 관한 검수권이 조리사에게도 주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수권을 교장, 서무, 영양사 등에게만 부여하고 조리를 실무로 하고 있는 조리사를 제외함은 대단히 부당한 일이다. 예를 들어 검수과정에서 식품에 오염되어온 포도상구균의 독소는 정상적 조리과정으로는 제거되기 어렵다. 즉, 검수과정

에서 포도상구균에 오염되어 있는 식품을 조리사가 제대로 조리하여도 내열성이 강한 독소를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우를 포함하여 조리과정 후의 교차오염 등, 식중독 사고 발생은 꼭 조리과정중의 실수에 의해서만 일어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일본의 조리사법에는 식중독 사고 발생시 조리사에게 해명의 기회가 주어지며, 조리과정중에 발생한 식중독 사고에 대해서만 조리사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과정이 없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도 식중독 사고 발생시 조리사에게 이와같은 해명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식중독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밝힌 후 그 책임의 소지를 따져야만 하겠다¹¹⁾.

두번째 이유는 축적된 경험과 조리지식이 풍부한 조리사가 식품검수에 참여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관리의 내실화를 이룰 수 있다는데 있다. 또한 식품은 2인 복수검수가 대원칙이지만 실제로 2인 복수검수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복수검수자 중의 1인의 검수권자는 마땅히 조리사여야 마땅하다.

3. 학교급식법시행령 제5조 제2항 3호와 5호 개정 건의안 (조리지도)

조리사는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의거 취득한 전문업종으로 조리가 고유의 임무이며 동시에 권리이다. 따라서 조리사의 구체적인 조리지도는 불필요하며 행정의 낭비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이는 오히려 조리사라는 직종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작업현장에서의 사기저하와 불필요한 마찰을 일으킬 뿐이다. 조리를 하기위해 자격을 갖추고 취업한 조리사에게서 '조리'의 권한을 빼앗는다는 것은 '조리사'라는 전문직종 자체를 부인하는 것으로서 위 조항은 시정되어야 한다.

참조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44조(영양사의 직무 등)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영양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2.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3.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4. 집단 급식소의 운영일지작성
5. 종업원의 영양지도 위생교육

위 규칙에는 '조리지도'가 없으며 이것 또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학교급식법시행령의 형평성에 어긋난 규정이라 아니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현재 학교급식 전담직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영양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이 수정되어야 마땅하다.

현 행	개정 건의안
<p>현재, 학교급식 전담직원은 급식학교의 장을 보좌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식단작성 및 위생관리 2. 식품재료의 선정 및 검수 3. 식품의 조리지도 및 검식 4. 영양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학생지도와 학부모의 상담 5. 조리실 종사자의 지도, 감독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일 2. 동일 3. 검식 4. 동일 5. 조리실 종사자의 영양지도 및 위생교육

4. 수당에 관한 사항

1) 위험수당

공무원 수당규정 제5장 제13조 위험근무수당에 의하면 여러부분에 걸쳐 고열, 고온 및 저온조건에서 위대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기계 가공, 분쇄, 증류, 냉동업무 및 폭발성 인화물질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예리한 칼날이 장치되거나 날카로운 금속성 부품이 부착된 농기계의 시험연구에 종사하는 자, 예리한 칼날이 장치되어 있는 절단기를 다루어 제본에 종사하는 자 등에 대한 위험수당 규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조리실은 도시가스기기, LPG가스기기, 고압스팀기, 튀김기, 절단기, 분쇄기 등 각종 위험요소가 산재되어 있음에도 조리사에게는 위험수당이 지급되지 않고있다. 이미 조리사들이 위 기기로부터 손목 절단, 손가락 절단, 안구건조증, 화상, 허리디스크, 건통, 두통, 요통 등 신체적 장애와 각종 부상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음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따라서 조리사에게도 위험수당이 마땅히 지급되는 것이 공정한 처사일 것이다. 더불어 위 사고가 발생할 시에는 공상처리가 되어야겠다¹²⁾.

2) 기술수당

공무원수당규정 제5장 제14조 특수업무수당에 의한 별표 11의 항목에 의하면(운전원, 철도보선원, 전기위험을 및 도시가스안전관리, 민원업무) 등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기술수당을 받고 있으며 면허가 필요한 전문직일 경우는 모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나 유독 '조리사'에게만은 업무수당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기능직의 처우개선이나 사기양양을 위해 배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영양사의 경우 조리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는 실 조리업무를 하지 않더라도 조리사 기술업무수당을 받고 있으나 정작 열악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조리사에게는 기술업무 수당조차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자도 당연히 영양사 기술업무수당을 받아야 함은 당연한 이치이다¹²⁾.

5. 조리사의 위생교육

현행은 법적 명시가 없음에도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조리사, 영양사는 모두 위생교육의 주체자임을 확실히 해야 한다.

조리사는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거 시행규칙 제49조, 제50조에 의하면 매년 5시간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 제27조, 시행규칙 제36조(위생교육 대상자) 1항 3호, 제37조(위생교육기관)에 의하면 조리사는 위생교육의 대상자가 아니라 위생교육기관 즉 위생교육의 주체로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양사에게 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조속한 시정이 필요하다. 이는 법에 위배되는 처사이며 조리, 영양차원에서 조리사, 영양사가 함께 종사원을 위생교육해야 한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36조(위생교육대상자) ①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교육을 받아야 할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가 지정하는 자로서 영업소의 위생관리를 책임지고 있는자. 이하 같다)

2. 식품위생관리인

3. 영양사와 조리사를 제외한 종업원

제37조(위생교육기관 등)①생략

1.~2. 생략

3.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에 종사하는 자 : 위생교육을 받은 영업주 또는 해당 업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영양사 또는 식품위생관리인

②위생교육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으로 하고, 위생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6. 학교집단급식소내의 사무실

현행은 조리실내에 영양사실이라는 명칭으로 사무실이 하나 있다. 현행 학교단체급식의 조리실내에는 특이하게도 '영양사실'이라는 명칭의 사무실과 갱의실, 식품보관실이 존재하고 있다. 조리실의 위생개념상 사무실이나 갱의실은 작업장과는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야 함에도 조리실을 거쳐야만 이동할 수 있거나 식품보관실 등을 통과해야 출입할 수 있는 구조로 배치되어있어 조리실 내외 출입객들이나 각종 위생사고 발생요인으로부터 무방비 상태로 노출됨으로써 각종 위해요소에 위협받고 있다. 또한 조리실내의 하나뿐인 사무실에서는 급식 관련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며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조리실 관계자들의 협의, 회의 교육장으로 사용되어야 마땅하나 사무실의 명칭을 특정한 사무실(영양사실)로 표기하여 사유공간화

할뿐만 아니라 위화감을 조성하기 때문에 명칭을 바꿀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영양사실을 급식사무실로 개칭하여 급식관련공무원인 조리사와 영양사가 함께 근무하면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학교급식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어야 한다.

학교급식법시행령	
제4조(시설·설비기준) ① 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조리실: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학생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시설로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하며, 내부 벽과 바닥은 타일 또는 콘크리트로 시공하여 식품의 세척과 배수 및 청소가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식품보관실:	환기·방습이 용이하여 식품과 식품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는데 적합한 곳에 두되, 방충 및 방서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개의실:	조리실과 인접한 곳에 두되, 조리종사자의 수에 따라 필요한 옷장을 두어야 한다.

7. 조리사의 지방 위생원 명칭사용에 관한 개정 건의안

	직군	직렬	직류	직급	비고
현행	보건위생	위생	위생/사역	기능직 10등급 지방위생원	청소원
현행	보건위생	위생	위생/사역	기능직 10등급 지방위생원	조리사
건의안	보건위생	식품	식품	기능직 9등급 조리기능사	조리의 고유기술을 인정함

현재 조리사의 직급은 기능직 10등급 지방 위생원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실제 지방위생원의 근간은 사역에 해당되는 청소원에서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볼때 전문가격증과 면허를 가지고 취업한 조리사에게 그 직급은 적절치 못하므로 마땅히 직렬의 조절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리사는 교육청 산하의 일반적인 기능직의 정원과 승진의 기회균등을 적용받아야 함이 옳으나 본인의 노력으로 조리기능장이 되어도 승진은 거의 불가능하며 이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전문기술정신에도 어긋난다.

기회균등과 행복추구의 권리를 가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창의적인 노력과 능동적인 자세로 국가에 봉사해야할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으로서 조리사 고유의 직렬과 직급을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VI. 국내의 학교급식 전담직원의 배치 및 사업현황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쳐온 유교주의의 관습화된 통념속에는 실무자보다는 이론가들을 존경하는 관념이 있다. 이러한 영향은 조리사에게도 영향을 미쳐온 것이 사실이어서 학교급식전담직원을 배치하는 법조문에 있어서도 조리사를 배제하고 영양사만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 조리사들에 대한 관념은 우리나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일본, 미국, 중국, 영국의 상황을 볼때 우리나라와 일본만이 현재까지 영양사를 학교급식전담직원으로 배치하고 있다¹³⁾. 일반적인 조리에 대한 생각도 우리나라와는 차이가 있는데 먼저 일본의 경우는 식품위생법과는 별도로 조리사법을 따로이 두고 조리사의 업무, 배치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으며, 일반점객업소의 면적이나 집단급식소(중소기업), 상시 인원 제한이 없이 모든 업소에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조리사 관련법이 식품위생법에 포함되며, 자율고용제를 택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주의 경제적 부담, 조리사의 수급부족 등에 따라 시행된 것이 아니고, 국민의 식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음식물 조리하는 조리사라는 불문율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표 5. 국내의 급식전담직원 배치 및 특징적 사업의 현황>¹³⁾

나라명	급식전담직원 배치 현황	급식사업현황
한국	급식전담직원으로 영양사를 의무고용제에 의거 배치 1개교 1인 원칙, 식품위생법의 의무고용제에 의거 조리사를 배치하고 국가보조조리원과 자모부담 고용 조리원으로 학생수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학교에 따라서는 자모가 당번으로 봉사하기도 한다.	'98년 초등학교 급식전면 실시(98.8%). 2000년까지 중·고등학교 급식 전면 실시 계획
일본	급식전담직원은 영양사 ▶단독조리장의 경우 ①700명이상 학교에는 1명 ②699명이하의 경우 4개교에 1명 ③학교수가 3개이하, 학생수가 합계 699명 이하인 시·점·촌의 경우 1명 ▶공동조리장의 경우 ① 3,001명 이상: 2명 ② 3,000명 이하: 1명 별도로 설치되어 있는 조리사법의 의무고용제에 의거하여 조리사를 배치하고 조리원은 학생수를 고려하여 배치한다.	공동조리 방식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나 배달관계로 1~2기간전에 만든 것을 먹게 되고 장시간 방치로 형·색·맛이 변하기 쉽고 교통사정 악화로 배달시간을 잘 맞추지 못하며 대량 급식의 특징으로 급식시설고장, 식중독의 경우 피해가 큰 문제점이 나타나고 생각보다 비용도 그리 싸지 않다. 급식재료중 쌀은 50~60%, 우유는 한병에 4엔씩 할인가격으로 정부에서 보조한다. 빵식으로 인한 식습관 변화를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젓가락 사용을 교육한다.

나라명	급식전담직원 배치 현황	급식사업현황
미국	<p>학교급식직원은 Manager supervisor, director 등의 명칭으로 자발적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수료한다. 학교급식초기에는 학교급식의 지도자로 영양사가 활동하였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부모 중 직무교육을 받은 사람이 활동한다. 조리사는 자율고용에 의거 배치되지만 미국의 경우 음식물 조리는 면허받은 조리사가 취급하는 것이 불문율로 되어 있어 사실상 의무고용제와 같다고 볼 수 있다.</p>	<p>National School Lunch Program(미국학교급식사업 : NSLP): 자격을 갖춘 학교에서 연방정부의 규정과 checklist의 점검사항을 이행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주정부와 참가계약을 맺으면 연방정부에서 급식비 지불과 급식품을 보조해준다. Nutrition Education Training Program(영양교육 및 훈련사업: NETP): 매일 점심급식에 대한 긍정적 경험과 학교내에서의 적절한 강화교육을 통해 아동들에게 영양적으로 균형된 식사의 가치교육, 교과과정과 교재개발, 영양교육 사업의 수행을 위한 교사와 학교급식직원의 훈련</p>
중국	<p>급식전담직원으로 주로 양호교사를 담당하게 하며 영양사는 지방자치 단체지역 일부 학교별로 배치하며 대부분 영양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다. 담당교사로 양호교사를 지정하고 있다. 조리사는 지정고용에 의거 배치되는데 이는 의무고용보다 더욱 강화된 제도이다.</p>	<p>'90년대를 맞이하여 학교급식 5개년 계획에 의거 급식실시율을 60%로 높였다. 1994년에는 1개교당 1인의 영양사를 배치하며 도시지역 급식을 확대 실시하며 아동의 결식, 외식의 문제로 인해 자체 조리방식으로 확대 실시 예정이다.</p>

나라명	급식전담직원 배치 현황	급식사업현황
영국		1976년: 480만명 급식중 10%를 무상 급식하고 나머지도 실제 급식비보다 싼 가격으로 급식비를 지불 1980년: 법 개정으로 지방교육 자치 단체에서 학생들에게 급식을 제공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해제되었고 이로서 급식비 부담이 상승하면서 도시락이나 학교 근처 스낵바에서 식사하는 아동들이 증가하였다. 한편 학교급식은 영양적 고려가 없다는 비난을 받았고 처음에 교사중심으로 배고픈 아동을 위해 급식하던 것을 요즈음은 교사들의 노조활동에서 교사들이 학교급식 감독을 거부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교급식 확대실시에 있어 교사들의 거부를 배제키 위해 급식전담요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미국의 경우도 사실상 의무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의 경우도 조리사법은 식품위생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의무고용제 보다 더욱 강화된 의미의 지정고용제를 택하고 있다. 즉, 면허받은 조리사를 업소규모, 환경 등을 고려하여 국가에서 지정하는 고용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다¹¹⁾.

그러므로 우리나라 역시 급식전담직원으로 영양사만을 명시할 것이 아니라 조리실무자인 조리사를 포함시켜서 영양사와 조리사가 협력 관계속에서 더 나은 급식실시에 종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VII. 결론-학교급식 조리사의 직무에 대한 제언

본 논문은 조리사의 직무와 관련된 부분들을 학교 급식법에서 상고하고, 이를 외국의 사례와 비교 검토하면서 효율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학교급식에서의 조리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조리사의 직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고 문제점들의 개선을 위한 개정 건의안들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학교급식 조리사들의 직무에 대해 개선할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학교급식법과 식품위생법상의 모순된 점들을 해결함으로써 일관된 법 적용을 할 수 있으며,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조리사들의 능력을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의 비교에서도 결코 학교급식전담직원에서 조리사를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학교급식법에 대한 개정 건의안과 조리사의 직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학교급식전담직원의 자격, 업무 및 배치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①항에 명시되어 있는 급식전담직원을 현행 영양사만 명시하던 것을 조리사와 영양사로 한다.
2.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②항의 전담직원의 업무 및 배치에서는 현행 영양사만의 업무에 대해서만 명시하던 것을 조리사와 영양사에 대해 각각 명시하여 서로 업무적으로 협조할 수 있게 한다.
3.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②항 2호에 현행 급식전담직원인 영양사만이 식품검수를 하게 하던 것을 조리사와 영양사가 각각 급식전담직원으로서 복수 검수케 한다.
4.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5조 ②항 3호와 5호에서 현행 급식전담직원인 영양사가 조리사와 조리실 종사자들에게 조리지도와 감독을 하게 되어있는데, 이는 조리에 관한 국가자격시험을 통과한 조리사의 업무로 이관해야 마땅하다.
5. 위험한 환경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조리사에게 기술수당과 위험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6. 현행 법적 명시가 없음에도 영양사가 조리사에게 위생교육을 해오던 것을 전적으로 조리사 보수교육에 이관하며, 오히려 조리사 역시 위생교육의 주체자로 조리실 종사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게 한다.
7. 학교급식시설내의 사무실 명칭도 영양사실에서 '급식사무실'로 바뀌어야 한다.
8. 학교급식 조리사들의 명칭이 청소원에서 근간을 둔 지방 위생원으로 되어있는 현재의 직급을 변경하고, 조리사 고유의 직렬과 직급을 가짐으로서 정원과 승진 등에서 다른 공무원들과 형평성이 맞도록 조처한다.

이러한 시정이 이루어질때 조리사와 영양사는 급식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 서로 협력하며, 상호 존중하는 입장에서 더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해 질 것이며, 이에 대한 혜택은 급식의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참고문헌

- Stone DM(1997) Major Foodborne Pathogens in Zoonotic Diseases, 제 10회 국제 Symposium, 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 West BB, Wood L, Haeger VF(1965) Food Service in Institutions. John Wiley and Sons, Inc
- 김성호(1997) 조리사들, 영양사들과의 업무 “불만”. 푸드 & 레스토랑 11월호.
- 김숙희(1998) 조리사 관련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기관광연구지 제 2호.
- 김종규(1997) 식중독 발생의 사례를 통해 본 학교급식의 문제점. 1997년도 식품위생안전성학회 추계학술세미나(1997년 9월 26일)
- 노병의(1997) 외국의 학교급식의 관리현황. 1997년도 식품위생안전성학회 추계학술세미나 (1997년 9월 26일) 식중독 발생경향의 변화와 집단급식소의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
- 대한민국헌법령집,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시행령,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 식품영양학과 교수협의회(1997), 단체급식, 수학사.
- 이기우(1999) 고등학교 급식정책방향. '99 학교급식 연수회. 교육부.
- 이용욱, 김종규(1987) 우리나라 식중독 발생동향 조사연구-통계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식품위생학회지 2(4).
- 이용욱, 김종규(1989) 우리나라의 식중독에 관련된 문헌고찰. 한국식품위생학회지 4(3).
- 日本食品衛生小六法(1995) 학교급식법, 신일본법규출판주식회사
- 정우천(1998) 학교급식조리사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 법규정으로 인한 업무 수행 못해. 푸드 & 레스토랑 1월호.

Abstract

A study about the cook's duty in the School Foodservice law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cook's duties in the School Foodservice law, comparing with those of other countries and to suggest the more useful details of cook's duties. As a result of this study many things of the cook's duties in the School Foodservice law have to be changed. If then, the gap of the School Foodservice law and Food Sanitation law will be decreased, logical application of two laws could be possible and a lot of cook's abilities could be enoughly used.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cooks can be responsible officials in the School Foodservice. Suggestions about cook's duties in the School Foodservice law are as follows.

1. Not only dietitian but also cook should be subscribed as a responsible official in the School Foodservice law.
2. Not only the duties of dietitian but also those of cook should be subscribed in the School Foodservice law.
3. Cook as a responsible official of School Foodservice should investigate the food as well as dietitian.
4. Dietitian teaches cook and assistant cook how to cook presently by the School Foodservice law, but cook should teach how to cook because cooking is cook's major and cook gets the national certificate of cooking.
5. Cooks do job under dangerous circumstances, so extra money should be paid to cooks.
6. Even if not being described in the law and education of sanitation is presently done in the cook's reeducation, dietitian educates sanitation to cook, so it has to be changed. Cook can educate sanitation to other workers in the School Foodservice.
7. The name of office room in the School Foodservice systems "dietitian's room" should be changed to "Foodservice office room".

If those suggestions are accomplished, cooks and dietitians can cooperate effectively and respectfully and the better School Foodservice can be served to students.

3인 익명심사 필

1999년 7월 10일 논문 접수

1999년 8월 10일 최종 심사